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80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염태영 · 정준호 · 이연희
박용갑 · 손명수 · 박홍근
김우영 · 이강일 · 윤종오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사용·수익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사용·수익 또는 소유

· 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수익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

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
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⑤ (생 략)</u>	<u>⑦ (현행 제5항과 같음)</u>